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및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대상을 수정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“주거약자 등”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“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”으로 변경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(안 제7조)
- 나. 종전의 “주거복지센터”를 “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” 변경하여 “지역센터”와 구분되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19조)
- 다. “중앙센터” 및 “지역센터”의 기능을 각각 규정함 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- 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5. 23. ~ 6. 12.) 결과: 의견있음(별도 첨부)
- 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0호 중 “주거약자 등의”를 “시장이”로, “필요한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”를 “서울특별시 중앙 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중앙센터”라 한다.)”로 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센터의 기능) ①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
2. 주거복지 정보 제공·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3.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
4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
5.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
6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사사업
7.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
8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
2. 주거복지 정보제공,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
3.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
4.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
5.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
6.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
7.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
8.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
9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1조제1항 중 “센터 및”을 “중앙센터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센터는”을 “중앙센터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을 “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“센터 및”을 각각 “중앙센터 및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”로, “센터 및”을 “중앙센터 및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그 밖에 <u>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</u></p>	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<u>시장이</u> ----- -----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-----</p>
<p>제19조(주거복지센터의 설치)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<u>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</u>와 지역별 <u>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.)</u>를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주거복지센터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 <u>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중앙센터”라 한다.)</u>----- -----.</p>
<p>제20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</u></p> <p>3. <u>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</u></p>	<p>제20조(센터의 기능) ① <u>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u></p> <p>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주거복지 정보 제공·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</u></p> <p>3. <u>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4.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</p> <p>5.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</p> <p>6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사사업</p> <p>7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<신 설></p>	<p><u>정책개발</u></p> <p>4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</p> <p>5.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</p> <p>6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사사업</p> <p>7.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</p> <p>8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 제1항에 관한 사항</p> <p>2. 주거복지 정보제공,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</p> <p>3.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</p> <p>4.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</p> <p>5.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</p> <p>6.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<u>센터 및 지역 센터</u>의 설치·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센터</u>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<u>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<u>센터 및 지역센터</u>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</p>	<p>7. <u>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</u></p> <p>8. <u>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</u></p> <p>9. <u>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제21조(관리 및 운영) ① ----- ----- <u>중앙센터 및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<u>중앙센터</u>는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「<u>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중앙센터</u> ----- 및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할 수 있다.</p> <p>⑦ 시장은 <u>센터 및 지역센터</u>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p> <p>⑧ (생략)</p> <p>제24조(재원) 시장은 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지기금조례</u>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,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<u>센터 및 지역센터</u>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-----.</p> <p>⑦ ----- <u>중앙센터 및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재원) ----- 「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지기금 조례</u>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중앙센터 및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(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형준 ○ 노원주거복지센터 ○ 김송희 ○ 이민선 ○ 정은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조직으로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앙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음(개정안 제20조 제1항 제8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도점검 지원 항목 삭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원주거복지센터 ○ 한선혜 ○ 정은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거복지센터 운영 전문성 및 안정을 위해 현행 2년 위탁기간 연장 필요(조례 제21조 제2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거복지센터는 기존 10개소로 시범운영을 거쳐 '18년도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현재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힘쓰는 단계이며, 위탁기간 연장은 현 체계가 안정된 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원주거복지센터 ○ 정은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조례(제21조 제3항)에서는 중앙센터가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 25개 지역센터는 모두 서울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 실정에 맞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 제21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현재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중앙과 지역센터 각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, 중앙에서 지역센터를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므로 개정대상 되지 않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OO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은 사례관리 기록을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“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” 문구 삭제 요청(개정안 제20조 제2항 제2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센터의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은 상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주거복지 서비스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구축된 주거복지통합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문구임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·용어를 명확화 하고 주거복지사업 대상을 주거약자 등에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이 은 서(02-2133-7028)